#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4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노용호・이명수・엄태영

김용판 • 박덕흠 • 지성호

김희곤 · 김성원 · 김영식

유경준 · 정희용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제65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을"을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 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 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 의제) ① -----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 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 허가 · 승인 · 동 의·면허 및 <u>협의 등(이하 "인</u>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ㅣ 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 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생 략)

- ② 제1항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 협의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 정 안

1. ~ 19. (현행과 같음)

는 해당 인허가등을 --

-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 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 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 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 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 닌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 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 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 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 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 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④ (현행 제7항과 같음)